

# 2020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수정 공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2020년 6월 5일 공고한 2020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8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 수정사항

### 가. 중국 학력 인정서류 안내 관련

- 중국 대학교 이상 학력을 제외한 초·중·고등학교 학력의 경우 대사관 확인 서류가 인정 가능함에 대한 더욱 정확한 안내를 위해 해당 공고 내용 수정

#### 수정 전(前)

##### 6. 시험의 일부면제

- 다. 시험의 일부면제 서류제출 및 심사
- 중국 학력의 경우 서울공자아카데미(한중문화협력연구원)에서 발급하는 학력확인서(한국어 번역)만 인정 가능(대사관 확인 서류 인정 불가)하며, 영국 학력의 경우 주한영국문화원에서 발급하는 학력확인서와 대사관 확인 중 택1 하여 제출 가능

#### 수정 후(後)

##### 6. 시험의 일부면제

- 다. 시험의 일부면제 서류제출 및 심사
- 중국 **대학교 이상** 학력\*의 경우 서울공자아카데미(한중문화협력연구원)에서 발급하는 학력확인서(한국어 번역)만 인정 가능(대사관 확인 서류 인정 불가)하며, 영국 학력의 경우 주한영국문화원에서 발급하는 학력확인서와 대사관 확인 중 택1 하여 제출 가능

\* 그 외 중국의 초·중·고등학교 학력의 경우 대사관 확인 서류 인정 가능

## 나. 국외에서 응시한 어학성적 인정 기준 관련

- 국외에서 취득한 토익(TOEIC) 및 일본어능력시험(JPT)의 성적 인정범위에 대한 더욱 정확한 안내를 위해 해당 공고 내용 수정

### 수정 전(前)

#### 8. 응시원서 접수

- **외국어시험 대체를 위한 공인어학 성적 제출**
  - 일본에서 취득한 토익(TOEIC) 시험은 자료실의 일본성적 진위확인 동의서 및 성적표 원본을 서류심사 기간 [‘20. 7. 13(월) 09:00 ~ 7. 24(금) 17:00]에 서류심사 기관(p. 서류제출 및 심사 기관 참조)으로 제출
  - 그 외 국외에서 취득한 어학성적의 경우 성적표 원본을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대사관 확인(공증)\*을 받아 국내에서 한국어로 번역·공증하여 서류심사 기간[‘20. 7. 13(월) 09:00 ~ 7. 24(금) 17:00]에 서류심사 기관 (p. 서류제출 및 심사 기관 참조)으로 제출
  - \*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가입 국가는 대사관 확인을 아포스티유(Apostille) 증명서로 대체 가능(국내에서 한국어로 번역·공증 필요)

### 수정 후(後)

#### 8. 응시원서 접수

- **외국어시험 대체를 위한 공인어학 성적 제출**
  - 국외에서 취득한 토익(TOEIC), 일본어능력시험(JPT)의 경우 일본에서 시행하는 시험성적만 인정하며, 원서접수 시 관련 정보(점수 등)를 입력하고,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자료실의 성적확인 동의서 및 성적표 사본을 반드시 전자우편([exam@hrdkorea.or.kr](mailto:exam@hrdkorea.or.kr))으로 제출
    - ※ 그 외 국가에서 취득한 토익(TOEIC), 일본어능력시험(JPT) 성적의 경우 인정하지 않음
  - 국외에서 취득한 일본어능력시험(JLPT)의 경우 원서접수 시 관련 정보(점수 등)를 입력하고, 성적표 사본을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전자우편([exam@hrdkorea.or.kr](mailto:exam@hrdkorea.or.kr))으로 제출
  - 그 외 국외에서 취득한 어학성적의 경우 성적표 원본을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대사관 확인(공증)\*을 받아 국내에서 한국어로 번역·공증하여 서류심사 기간[‘20. 7. 13(월) 09:00 ~ 7. 24(금) 17:00]에 서류심사 기관 (p. 서류제출 및 심사 기관 참조)으로 제출
  - \*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가입 국가는 대사관 확인을 아포스티유(Apostille) 증명서로 대체 가능(국내에서 한국어로 번역·공증 필요)

## 1. 2020년도 시험 주요 변경사항 안내

### 가. 원서접수 기간 변경

- 기존 10일간 진행하던 원서접수 기간을 5일로 단축

변경 전(前)	변경 후(後)
• 10일 간 원서접수 시행	• 5일 간 원서접수 시행

### 나. 시험의 일부면제 기준 변경(「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1조 및 [별표16])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기준 변경(2020년도 시험부터 적용)

변경 전(前)	변경 후(後)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외국어시험 면제<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li></ul></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외국어시험 면제<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이상 계속하여(삭제) 강의(강의경력 합산 인정 가능)</li></ul></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관광법규·관광학개론 면제<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li></ul></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관광법규·관광학개론 과목 면제<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또는 이에 준하는 전공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전공과목 30학점 이상 이수 조건 추가)</li></ul></li></ul>

※ 시험의 일부면제 기준 변경 관련 세부사항은 p.6 '나. 시험의 일부면제 기준 관련 주요 변경사항' 참조

## 2. 2021년도 제11회 시험 주요 변경사항 안내(예정)

### 가. 국가전문자격시험 신분확인 및 전자(통신)기기 관리·운영 변경

1. 시험당일 인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 처리
2. 전자·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3. 소지품 정리시간(수험자교육 시 휴대폰 등 전자기기 지정장소 제출) 이후 시험 중 전자·통신기기 등 소지불가 물품을 소지·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0점) 처리
4. 본 변경기준은 시험일 기준 2021. 1. 1 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

※ 2021. 1. 1. 부터 공단에서 실시하는 37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수험자는 시험정지(퇴실) 및 무효(0점)처리 됨

### 3.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구 분	면제서류 접수·심사	원서접수 (1·2차 동시접수)	시험장소 공 고	시행지역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제1차 (필기) 시 험	7. 13(월) 09:00 ~ 7. 24(금) 17:00	7. 20(월) 09:00 ~ 7. 24(금) 18:00 [5일간]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선택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제주 [6개 지역]	9. 5(토)	10. 28(수)
제2차 (면접) 시 험	[10일간, 토·일 제외]		'20. 11. 16(월) 공고 예정		11. 28(토) ~ 11. 29(일)	12. 16(수)

- ※ 증빙서류 제출·심사 후에 시험의 일부면제자로 원서접수 가능
-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 하며, 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 공인어학성적 인정 기준 : '18. 7. 25 ~ '20. 7. 24 사이에 실시 및 성적발표가 된 시험
- ※ 제2차(면접) 시험만 응시하는 수험자(필기시험 면제자)도 반드시 위의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완료해야 시험 응시 가능
- ※ 가상계좌는 접수완료 시점이 13시 이전은 당일 14시까지 입금완료, 13시 이후는 익일 14시까지 입금완료 해야 함(지정시간까지 미입금 시 원서접수가 취소됨)
- ※ 원서접수 마감일 13시 이후에는 가상계좌 결제가 불가하고 신용카드, 계좌이체만 가능
- ※ 기타 시험 관련 상세정보는 Q-Net 관광통역안내사 홈페이지 참조

### 4.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 가. 시험과목

구 분	시 험 과 목	시험방법	배 점
외국어 시 험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 · 인도네시아어, 아랍어 중 1과목	다른 외국어시험 성적으로 대체	
제1차 (필기) 시 험	① 국사	객관식 (4지택일형)	40%
	② 관광자원해설		20%
	③ 관광법규(「관광기본법」·「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의 관광 관련 법규)		20%
	④ 관광학개론		20%
제2차 (면접) 시 험	① 국가관·사명감 등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④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면접시험	-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나. 시험시간

구분	교시	시 험 과 목	입실시간	시험시간	문항 수
제1차 (필기) 시 험	1교시	① 국사 ② 관광자원해설	09:00	09:30 ~ 10:20 (50분)	과목별 25문항
	2교시	③ 관광법규 ④ 관광학개론	10:40	10:50 ~ 11:40 (50분)	
제2차 (면접) 시 험	-	① 국가관·사명감 등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④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11. 16(월) 공지 예정	1인당 10분 내외	-

※ 제2차(면접) 시험의 시행기관 별 시험일시, 시험장소 등은 '20. 11. 16(월) Q-Net 관광통역안내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interpreter>)에 별도 공지 예정

## 5.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가. 응시자격 : 없음

- 단,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함(「관광진흥법」 제38조제9항)

### 나. 결격사유(「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

- 아래의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관광종사원으로 등록하고 및 관광종사원 자격증 발급 가능
  -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증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관광진흥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 시험의 일부면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1조 및 [별표16])

### 가. 시험의 일부면제 유형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이상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시험을 면제
- 4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해당 언어권의 언어를 사용하는 학교에서 공부한 것을 말한다)을 한 경력이 있는 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5년 이상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시험을 면제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전공과목이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또는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구성되는 전공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 안내를 하기 위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
-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
-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만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을 면제

〈 시험의 일부면제 유형별 구분 〉

구 분	면 제 유 형
필기 및 외국어시험 면제	전년도 필기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
필기시험 면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다른 외국어 분야의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에 응시하는 자
필기시험 일부과목 면제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면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 분야를 전공(전공과목이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또는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구성되는 전공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에서 실시하는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외국어시험 면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이상 강의한 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고등학교 또는 고등 기술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5년 이상 강의한 자 4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유학(해당 언어권의 언어를 사용하는 학교에서 공부한 것을 말한다)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시험의 일부면제 기준 관련 주요 변경사항(2020년도 시험부터 적용)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기준 변경

변경 전(前)	변경 후(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어시험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어시험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이상 <del>계속하여</del>(삭제) 강의 (강의경력 합산 인정 가능)</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법규·관광학개론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법규·관광학개론 과목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또는 이에 준하는 전공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전공과목 30학점 이상 이수 조건 추가)</li> </ul> </li> </ul>

- (외국어시험 면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해당 외국어를 강의한 경력을 합산하여 인정 가능
- (관광법규·관광학개론 과목 면제) 관광분야 학과(학과명에 ‘관광’ 문구가 포함된 학과)에서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을 포함한 해당 학과의 전공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경우 인정

구 분	세 부 내 용(해당 조건 모두 만족)
학 과 명	해당 학과명에 ‘관광’ 문구가 포함된 학과를 졸업
전공과목 이수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을 포함한 해당 학과의 전공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

※ 관광분야 학과 졸업(예정) + 해당 학과에서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을 전공으로 이수 + 해당 학과의 전공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만 면제 가능

#### 다. 시험의 일부면제 서류제출 및 심사

- 서류제출 및 심사 기간 : ‘20. 7. 13(월) 09:00 ~ 7. 24(금) 17:00 [10일간]
  - ※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등 제외
  - ※ 시험의 일부면제자는 제출된 서류가 승인된(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후 원서 접수 진행 (승인 전, 원서접수 시 일방응시자로 접수 됨)
- 면제대상자 및 유형별 제출서류

#### < 시험의 일부면제 유형별 구분 >

구 분	면 제 유 형
필기 및 외국어시험 면제	전년도 필기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
필기시험 면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다른 외국어 분야의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에 응시하는 자
필기시험 일부과목 면제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면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전공과목이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또는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구성되는 전공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에서 실시하는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외국어시험 면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이상 강의한 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5년 이상 강의한 자 4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유학(해당 언어권의 언어를 사용하는 학교에서 공부한 것을 말한다)한 경력이 있는 자



**< 시험의 일부면제 유형별 제출서류 >**

구 분	면 제 유 형	제 출 서 류
필기 및 외국어시험 면제	전년도 필기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	제출서류 없음 ※ 단, Q-Net 기존아이디로 로그인 후 접수해야 면제자로 접수 가능
필기시험 면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다른 외국어 분야의 관광 통역안내사 시험에 응시하는 자	- 다른 외국어 분야의 공인어학성적 소지자 → 제출서류 없음(원서접수 시 해당 공인어학성적 정보 입력) - 강의·근무·유학으로 인한 외국어시험 면제자 → 아래의 외국어시험 면제 제출서류 참조
필기시험 일부과목 면제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면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 (전공과목이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또는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구성되는 전공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졸업한 자	1. 서류심사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공단양식) 2.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3. 성적증명서 ※ 단, 전공·교양 등 이수 구분 및 이수 학점이 명확히 표기 되어 있어야 함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에서 실시하는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제출서류 없음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교육과정 이수내역 자동 등록) ※ 단, Q-Net 기존아이디로 로그인 후 접수해야 면제자로 접수 가능
외국어시험 면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이상 강의한 자	1. 서류심사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공단양식) 2.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 단, 강의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단 양식 경력증명서로 작성하여 제출 3. 강의실적증명서(강의과목 및 주당 수업시간 명시) 원본 4. 공적증빙서류*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중 택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5년 이상 강의한 자	
	4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내기업의 해외근무의 경우 1. 서류심사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공단양식) 2.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 단, 해외근무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단양식 경력증명서로 작성하여 제출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사본 (원본제시) 중 택1 4. 공적증빙서류*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중 택1  - 해외기업의 해외근무의 경우 1. 서류심사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공단양식) 2.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 단, 해외근무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단양식 경력증명서로 작성하여 제출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사본 (원본제시)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중 택1 4. 법인설립여부가 확인되는 서류(법인등기부 등본 등) 또는 소득금액증명원(해당 국가의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중 택1

	<p>4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유학(해당 언어권의 언어를 사용하는 학교에서 공부한 것을 말한다)한 경력이 있는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서류심사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공단양식)</li> <li>2.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 단, 재학기간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li> <li>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사본(원본제시)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중 택1</li> </ol>
--	--	---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외국(경력, 학력 등) 발급서류는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대사관확인(공증) 후 국내에 있는 공증사무소 등에서 한국어로 번역·공증하여야 하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재외국민등록부등본·여권사본(원본제시) 등에는 유학(근무)기간 전 출국 및 유학(근무)기간 후 입국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 단, 유학(근무)기간 중 국내에서 3개월 이상 장기체류한 경우 해당 기간은 경력기간에서 제외
- ※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가입 국가는 대사관 확인을 아포스티유(Apostille) 증명서로 대체 가능(국내에서 한국어로 번역·공증 필요)
- 중국 대학교 이상 학력\*의 경우 서울공자아카데미(한중문화협력연구원)에서 발급하는 학력확인서(한국어 번역)만 인정 가능(대사관 확인 서류 인정 불가)하며, 영국 학력의 경우 주한영국문화원에서 발급하는 학력확인서와 대사관 확인 중 택1 하여 제출 가능
- \* 그 외 중국의 초·중·고등학교 학력의 경우 대사관 확인 서류 인정
- 공적증빙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조회로 대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전체이력) : <a href="http://www.ei.go.kr">www.ei.go.kr</a> (☎ 1350)</li> <li>■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 <a href="http://www.nhic.or.kr">www.nhic.or.kr</a> (☎ 1577-1000)</li> <li>■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전체이력) : <a href="http://ww.npc.or.kr">ww.npc.or.kr</a> (☎ 1350)</li> </ul>
---

-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에 해외 근무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공단양식 경력증명서에 정보 기재 후 회사 직인 날인

○ 서류제출기간 내에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제1차(필기) 시험 시행일[‘20. 9. 5(토)]에 졸업(예정)증명서 원본을 시험장 시험본부로 제출(미제출 시 필기시험 무효처리)

- 학력·경력 산정 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20. 7. 24(금)] 기준
- 서류제출 방법 : 아래의 서류심사 기관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서류제출 및 심사 기관

기 관 명	주 소	우편번호	담당부서	연 락 처
서울지역본부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02512	전문자격시험부	02-2137-0553
부산지역본부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46519	전문자격시험부	051-330-1916
대구지역본부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42704	전문자격시험부	053-580-2383
인천지역본부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21634	전문자격시험부	032-820-8678
대전지역본부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1	35000	전문자격시험부	042-580-9151
제주지사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63220	자격시험부	064-729-0712

※ 등기우편 제출 시 ‘20. 7. 24(금) 17:00까지 위의 서류심사 기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봉투에 반드시 “관광통역안내사 시험 면제 관련 서류 재증” 표기

※ 위의 서류심사 기관 외의 기관(ex :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 본부 등)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심사하지 않으며, 별도의 안내 없이 폐기처리 될 수 있음

○ 기타 참고사항

- 제출하는 모든 서류(어학성적표, 경력·학력서류 원본 등 일체)는 서류제출 및 심사 기간 내 해당 기관에 지참하여 방문할 경우, 담당자의 검토 및 원본대조필 후 원본 반환 가능

※ 단, 등기우편 제출 시 원본 서류 반환(원본대조필) 불가

- 서류심사 및 전산 승인 완료 후 시험의 일부면제자로 원서접수 가능

**7. 합격자 결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5조 및 제46조)

- 제1차(필기) 시험 :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의 점수가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제2차(면접) 시험 :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8. 응시원서 접수

### 가. 원서접수 기간

- 제1·2차 시험(동시접수) : '20. 7. 20(월) 09:00 ~ 7. 24(금) 18:00 [5일간]
-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 제1·2차 시험 동시접수에 따라 제2차 시험에만 응시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간에 접수하여야 함
- ※ 가상계좌는 접수완료 시점이 13시 이전은 당일 14시까지 입금완료, 13시 이후는 익일 14시까지 입금완료 해야 함(지정시간까지 미입금 시 원서접수가 취소됨)
- ※ 원서접수 마감일 13시 이후에는 가상계좌 결제가 불가하고 신용카드, 계좌이체만 가능

### 나. 접수방법

- Q-Net 관광통역안내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interpreter>)를 통한 온라인 원서접수
- 변경사항 발생 시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  
이므로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 ※ 알림서비스 수신동의 시에 시험실 사전 안내 및 합격축하 메시지 발송

#### [ 응시자 공통사항 ]

-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을 파일(JPG, JPEG 파일, 사이즈 : 150 X 20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로 첨부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접수
-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수험자를 위해 접수도우미 운영

### 다. 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제1·2차 시험 동시접수) : 20,000원
- 결제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택1)

### 라. 수수료 환불(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택1)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 ※ 환불신청(원서접수 취소)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 마. 수험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수험자가 출력
- 수험표는 시험 당일까지 수험자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 ※ 「SMART Q-Finder」 도입으로 시험전일 18:00부터 시험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바. 원서접수 완료 후(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가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재접수 및 내용 변경 불가

## 사. 장애인 등 응시편의 제공

- 장애인 등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응시편의 요구 사항을 선택
  -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장애 또는 응시편의제공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시험 시행기관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제2항 제3호 마목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일시적 신체장애 수험자 중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의3) 의사진단서 제출(진단서 유효기간 명시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포함,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 소견서 제출 시 인정 가능,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 증빙서류 미제출시, 일반수험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응시해야 함
- 기타,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응시편의 제공사항은 '장애유형 시험시간 적용 기준' 참고

###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2. 해당 응시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는 이유(불편사항) 등
3.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4. 진단서 유효기간

※ 단,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따름

□ 응시편의 제공 신청 대상 유형별 시험시간 적용 기준

참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628호) 등에 따라 **장애 등급 대신, 장애 정도로 표현함.**

장애유형		필기(답)형 시험	작업형 시험	제출서류	
시각장애	중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험시간 1.7배 연장	■ 시험시간 1.5배 연장	①,②,③호 중 하나	
	경증(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시험시간 1.2배 연장	①,②,③호 중 하나	
뇌병변장애	장애정도 구분 없음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시험시간 1.3배 연장	①,②,③호 중 하나	
지체장애	상지	① 중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시험시간 1.3배 연장	①,②,③호 중 하나
		② 경증(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시험시간 1.2배 연장	■ 시험시간 1.2배 연장	①,②,③호 중 하나
	하지	③ 하지 (정도 구분 없음, 척추장애 포함)	■ 시험시간 일반응시자와 동일	■ 시험시간 1.1배 연장	①,②,③호 중 하나
	④ 복합장애 [상지+하지]		■ 상지장애와 동일	■ ① 또는 ②의 정도에 부여한 시간 + ③의 장애 시 추가 부여한 시간	①,②,③호 중 하나
청각장애	장애정도 구분 없음	■ 시험시간 일반응시자와 동일		①,②,③호 중 하나	
기타 의료기관장이 인정한 장애	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장애의 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④호	
	장애정도 구분 없음 (과민성대장증후군 및 과민성방광증후군, 심장, 심장, 장루·요루 장애 등)	■ 시험시간 일반응시자와 동일 - 시험 중 확장실 사용 허용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 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

※ 증빙서류

-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은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부. 다만,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명서 제출
-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및 상이등급 과 상이부위 확인이 가능한 서류(상이 판정 신체검사 결과통지서 등) 각 1부
-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한 장애급여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관계 기관이 발행한 보험급여확인원 원본 1부.
- ④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포함)
  - 일시적 신체장애 수험자 중 시험시간 연장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의료법 제3조제2항제 3호마목의 종합병원 의사진단서 제출(진단서 유효기간 기입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 (예시) 복합장애인 중 손부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시간 산정 방법

• 시험시간이 60분인 경우(지체장애 상지장애① + 하지장애③ 작업형 시험 적용 시)  
 ⇒ ①의 장애 정도에 부여한 시간[표준시간(60분) + (60분)\*0.3]=78분  
 + ③의 장애 시 추가 부여한 시간[(60분\*0.1)=6분] = 84분

## □ 외국어시험 대체를 위한 공인어학성적 제출

### 가. 언어별 공인어학시험의 종류 및 기준 점수

○ 기준점수(「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별표15])

언어	어학시험	기준점수
영어	토플(TOEFL) PBT	584점 이상
	토플(TOEFL) IBT	81점 이상
	토익(TOEIC)	760점 이상
	텡스(TEPS)	372점 이상
	지텔프(G-TELP)	레벨2 74점 이상
	플렉스(FLEX)	776점 이상
일본어	일본어능력시험(JPT)	740점 이상
	일본어검정시험(日檢, NIKKEN)	750점 이상
	플렉스(FLEX)	776점 이상
	일본어능력시험(JLPT)	N1 이상
중국어	한어수평고시(HSK)	5급 이상
	플렉스(FLEX)	776점 이상
	실용중국어시험(BCT) (B)	181점 이상
	실용중국어시험(BCT) (B)L&R	601점 이상
	중국어실용능력시험(CPT)	750점 이상
	대만중국어능력시험(TOCFL)	5급(유리) 이상
프랑스어	플렉스(FLEX)	776점 이상
	델프/달프(DELF/DALF)	델프(DELF) B2 이상
독일어	플렉스(FLEX)	776점 이상
	괴테어학검정시험 (Goethe Zertifikat)	B1(ZD) 이상
스페인어	플렉스(FLEX)	776점 이상
	델레(DELE)	B2 이상
러시아어	플렉스(FLEX)	776점 이상
	토르플(TORFL)	1단계 이상
이탈리아어	칠스(CILS)	레벨2-B2(Livello Due-B2) 이상
	첼리(CELI)	첼리(CELI) 3 이상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아랍어	플렉스(FLEX)	600점 이상

-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18. 7. 25)에 시험이 시행되고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인터넷 합격자 발표 완료)된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 ※ '18. 7. 25 ~ '20. 7. 24 사이에 시험이 실시되고, 성적발표가 된 시험만 인정
  - ※ 프랑스어(불어) 델프/달프(DELF/DALF)는 해당 급수 취득 후 재응시가 불가하므로, 위의 공인어학성적 인정 기준일에 상관없이 기준등급 이상이면 인정
- 해당 외국어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또는 특별시험은 인정하지 않음
- 국외에서 취득한 어학성적 인정방법
  - 국외에서 취득한 토익(TOEIC), 일본어능력시험(JPT)의 경우 일본에서 시행하는 시험성적만 인정하며, 원서접수 시 관련 정보(점수 등)를 입력하고,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자료실의 성적확인 동의서 및 성적표 사본을 반드시 전자우편([exam@hrdkorea.or.kr](mailto:exam@hrdkorea.or.kr))으로 제출
    - ※ 그 외 국가에서 취득한 토익(TOEIC), 일본어능력시험(JPT) 성적의 경우 인정하지 않음
  - 국외에서 취득한 일본어능력시험(JLPT)의 경우 원서접수 시 관련 정보(점수 등)를 입력하고, 성적표 사본을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전자우편([exam@hrdkorea.or.kr](mailto:exam@hrdkorea.or.kr))으로 제출
  - 그 외 국외에서 취득한 어학성적의 경우 성적표 원본을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대사관 확인(공증)\*을 받아 국내에서 한국어로 번역·공증하여 서류심사 기간['20. 7. 13(월) 09:00 ~ 7. 24(금) 17:00]에 서류심사 기관(p. 서류제출 및 심사 기관 참조)으로 제출
    - \*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가입 국가는 대사관 확인을 아포스티유(Apostille) 증명서로 대체 가능(국내에서 한국어로 번역·공증 필요)

## 나. 공인어학성적 제출 방법

- 원서접수 시 해당 공인어학시험 종류를 선택하고, 응시일자 및 취득점수 등을 정확히 입력
  - ※ 수험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단에서 해당 공인어학시험 시행 기관에 진위여부 조회 예정



- 기존에 제출한 성적이 2020년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에도 유효한 경우 어학성적 재입력 생략 가능(Q-Net 마이페이지 → 어학성적 제출내역 메뉴에서 기재출 여부 확인 가능)

**< 공인어학성적 제출 관련 유의사항 >**

- 해당 외국어시험 시행기관의 성적 진위여부 조회 결과 부적격자(착오 입력 등)는 성적표 원본제출 등을 통해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소명대상자 및 소명방법은 '20. 8. 31(월) Q-Net 관광통역안내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interpreter>)에 공지 예정
- 공인어학성적 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소명자료로 성적표 원본을 제출할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공인어학성적 소명대상자(진위여부 미확인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성적표 원본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필기시험 무효처리 및 면접시험 응시 불가
- HSK는 시험일로부터 2년간만 성적조회가 가능하므로, HSK 성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수험자는 원서접수 시 어학시험 응시장소 및 시험일, 접수, 등록번호 등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함
- 공인어학성적 정보의 오입력 등으로 조회가능 기간(시험일로부터 2년) 내에 조회되지 않을 경우, 성적 진위여부 확인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외국어시험 대체 불인정, 필기시험 무효처리 등)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사유임
- 성적표 원본 등을 위·변조하는 경우 부정행위 처리 및 고발 조치 예정

## 9. 제1차(필기) 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 기간 : '20. 9. 5(토) 14:00 ~ 9. 11(금) 18:00 [7일간]
  - 방법 : Q-Net 관광통역안내사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및 의견접수
  - ※ 가답안 의견제시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는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함

## 10.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 가. 합격자 발표

- 발표일시
  - 제1차(필기) 시험 : '20. 10. 28(수) 09:00
  - 제2차(면접) 시험 : '20. 12. 16(수) 09:00
- 발표방법
  - Q-Net 관광통역안내사 홈페이지 [60일간]
  - ARS(☎ 1666-0100) [4일간]

### 나. 자격증 발급

- 발급기관 : 한국관광공사
- 발급신청 : 온라인 신청(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지)
  - ※ 단,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자격증 신청 및 발급 가능 (2019년도 시험부터 적용, 그 이전 합격자의 경우 소급적용 불가)

## 11. 수험자 유의사항

### 【 제1·2차 시험 공통 수험자 유의사항 】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 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 ※ 알림서비스 수신동의 시에 시험실 사전 안내 및 합격축하 메시지 발송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 (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포,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 매 교시 시험시작 이후 입실불가
  - ※ 수험자 입실완료시간 20분 전 교실별 좌석배치도 부착
  - ※ 신분증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복지카드(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동포 국내거소증, 신분확인증빙서 및 주민등록발급신청서, 국가자격증, 중·고등학교 학생증 및 청소년증(단, 중·고등학교 학생증의 경우 사진과 생년월일이 명기되어있는 경우에만 인정)
  - ※ ‘신분증미확인자 각서’ 제출 후 지정 기일까지 수험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공단 방문하여 신분 확인을 받지 아니할 경우 당해시험 **무효처리**
3.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시험시간 1/2 경과 전까지 퇴실할 수 없으므로 과도한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다음 교(차)시 재입실·응시 불가 및 당해시험 **무효처리**
  - ※ 단,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 시 해당교시 재 입실이 불가하고, 시험시간 1/2 경과 전까지 시험본부에 대기
  - ※ 제2차 시험 1·2급은 2교시만 시험시간 1/2 경과 후 퇴실 가능(재입실 불가)
5. 결시 또는 기권, 답안카드(답안지) 제출 불응한 수험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6.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에게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3년** 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8.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시험시간은 타종에 의하여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 ※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스마트워치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
9. 전자계산기는 필요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SD카드 포함)를 제거, 삭제(리셋, 초기화)하고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 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메모리(SD카드 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불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 ※ 시험일 이전에 리셋 점검하여 계산기 작동여부 등 사전확인 및 재설정(초기화 이후 세팅) 방법숙지
10.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 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 휴대폰은 전원OFF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
11.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없거나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하시기 바랍니다.
12.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13.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시험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격 큐넷 홈페이지의 시행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입니다.

## 【 제1차(필기)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

1.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 또는 방송(유의사항)에 따라 답안카드에 수험번호를 기재 마킹하고,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 확인 후 답안카드에 형별을 마킹하여야 합니다.
3.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번까지 인쇄되어 있습니다. 답안 마킹 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마킹**하여야 합니다.
  - ※ 답안카드 견본을 Q-Net 자격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
4. 답안카드 기재·마킹 시에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5.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수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마킹착오, 불완전한 마킹·수정, 예비마킹, 형별착오 마킹 등)로 판독불능,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 【 제2차(면접)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

1. 면접시험 세부 일정 및 장소는 '20. 11. 16(월) Q-Net 관광통역안내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interpreter>)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2. 수험자는 일시·장소 및 입실시간을 정확하게 확인 후 신분증과 수험표를 소지하고 시험당일 입실시간까지 해당 시험장 수험자 대기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 입실시간 이후에는 시험 응시가 불가하므로 시간 내 도착하여야 함
3. 소속회사 근무복, 군복, 교복 등 제복(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모든 의복 포함)을 착용하고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의 엄정·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기타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Q-Net 관광통역안내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interpreter>)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 (☎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